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2021.10.05. 부분개정][시행 2021.10.10.]

전문

우리 공과대학 학생회는 학생들의 힘으로 세운 학생자치기구로서 올바른 대학문화의 재건과 수호 및 발전을 그 이상(理想)으로 삼는다. 모든 공과대학 학생들은 민주적인 학생회 운영을 통한 이상의 자주적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한다.

제1장 총칙-----	2
제2장 공과대학학생총회-----	4
제3장 학생총투표-----	5
제4장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6
제5장 공과대학운영위원회-----	9
제6장 공과대학학생회장단-----	10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12
제8장 공과대학집행국-----	14
제9장 학부 및 학과 학생회-----	15
제10장 자치단체-----	16
제11장 재정-----	19
제12장 선거-----	21
제13장 회칙개정-----	23
부칙-----	23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회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대학문화 재건과 수호 및 발전의 자주적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내에 둔다.

제4조 (회원)

- ① 입학·편입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학부 과정 소속이 된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단, 건축학과는 제외한다.
- ②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③ 본회의 정회원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과 공과대학 소속 학부 및 학과로의 전공진입이 예정된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
- ④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있는 자는 해당 기간 중 준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는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나 본회 및 기타 정당한 학생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 ③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④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가할 권리, 본회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본회의 정회원은 학문 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⑥ 본회의 정회원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권리를 갖는다.
- ⑦ 준회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회 산하 의결기구에 제출될 서면 발의권
 3. 본회 산하 의결기구 의결권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가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있는 경우 전 항

제1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제6조 (본회의 구성)

본회는 목적 달성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과대학학생총회,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공과대학운영위원회, 공과대학집행국,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자치단체를 둘 수 있다.

제7조 (학교운영참여)

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2. 학생권익과 밀접한 사항
3.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진행
4.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

제8조 (자문위원회)

본회는 그 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우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2 장 공과대학학생총회

제9조 (지위)

공과대학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원 및 준회원 중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1조 (의장)

- ① 총회의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다만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공과대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공과대학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대행한다. 공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 탄핵, 해임결의가 된 경우에는 공과대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공과대학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여 대행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이 안건의 주제일시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이 의장이 될 수 없으며, 본회 공과대학운영위원에서 1인의 임시의장을 호선하고,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거친다.

제12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탄핵안 심의, 의결
2. 기타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및 본회 회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의결

제13조 (회의 및 운영)

- ① 총회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는 7일 전에 그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총회 구성원의 1/5 이상 출석으로 개최된다.

제14조 (의결)

-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3조 3항에 의거, 총회의 개최 또는 의결이 불가(무산)할 경우, 그 안건 처리는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한다.
- ③ 제2항의 실행에 있어 제12조 1항은 제외된다.
- ④ 총회의 의결방식은 원칙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비표에 의한 기명투표도 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총투표

제15조 (지위)

학생총투표는 본 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방식이다.

제16조 (권한)

학생총투표는 본회의 존립 및 회의 활동과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 (구성)

학생총투표는 본회의 유권자 전체로 구성된다.

제18조 (회의 및 운영)

- ① 학생총투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
 1.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의 심의를 통한 경우
 2.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의 발의에 의한 경우
 3.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요구에 의한 경우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학생총투표 시작일 7일 이전에 사유를 명시하고 학생총투표 실시를 공고한다.
- ③ 학생총투표는 발의 후 3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생총투표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투표에 의한다.

제19조 (의결)

학생총투표는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총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20조 (관리)

- ① 학생총투표는 공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② 투표는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한다.

제 4 장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

제21조 (지위)

공과대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공학대회")는 총회의 위임 기구이며, 동시에 본회의 심의, 의결 및 감사기구이다.

제22조 (대의원 구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공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3. 공학대회에서 특정 집단을 대표한다고 인정된 자치단체의 대표단
 4. 각 학부 및 학과의 비례대의원
- ② 공학대회 대의원은 제1항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기구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뽑힌 대표에 한한다.
- ③ 공과대학 비례대의원의 총 선출 인원 기준은 총학생회 회칙을 따른다.
- ④ 각 학부 및 학과는 다음 공식에 따라 선출된 C명의 비례대의원을 파견한다. (비례대의원 선출기준 인원은 2학기에 시행되는 직선대표 선거 당시 최종 등록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text{식1. } A = \frac{\text{각 단위의 재학생 수}}{\text{각 단위의 직선대표 수}}$$

(위 값은 직선대표당 대표하는 학생수를 의미한다.)

$$\text{식2. } B = \frac{\text{각 단위의 재학생 수}}{\text{전체 A중 최솟값} \times 3}$$

(3은 현재에서 제시한 1:3의 비율의 값을 의미한다.)

$$\text{식3. } C = B - \text{해당 단위의 직선대표수} = \text{해당단위의 비례대의원 수}$$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양의 값만이 의미를 가진다.)

- 가. 비례대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하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와 같이 시행한다. 선출방법은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방법에 따라 자격과 기준을 정한다.
- 나. 선출된 비례대의원은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칙에 따라 총회 혹은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는 회의기구에서 인준하며, 인준 후 학내 구성원에게 공표함으로써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 다. 비례대의원은 공학대회 7일 전까지 인준하여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 선거증빙자료와 함께 통보한다.

제23조 (의장)

공학대회 의장은 본회의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제40조에 의한 탄핵 안건 시 탄핵 당사자가 의장이 될 수 없으며, 탄핵 당사자를 제외한 본회 공과대학운영위원회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24조 (소집)

- ① 공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공학대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⑤ 공학대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 공학대회 안건은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 단, 제25조 3항은 제외된다.
- ⑥ 공학대회와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의 대의원 구성이 동일할 때 공학대회 안건은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 위임된다.
- ⑦ 공학대회는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비대면 화상 회의로 일부 대체될 수 있다.

제25조 (업무 및 권한)

공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회칙개정 심의와 발의 및 의결
2. 총회의 소집 요구
3.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소추안 심의
4. 학생총투표 심의
5. 신설 학부 및 학과 학생회장의 자격 인준
6. 본회 각 집행국장의 출석 요구
7. 본회 각 집행국장의 인준 및 해임 의결
8. 신설 자치단체의 인준
9. 본회 사업의 검토, 조정 감사 및 의결
10. 본회 예·결산안 심의, 조정 및 의결
11. 기타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및 공학대회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 의결
12. 학부 및 학과 학생회 회칙 등이 공과대학 학생회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심의, 권고의결
1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 요구
14. 총회의 위임받은 사안에 대한 심의, 의결

제26조 (개회)

공학대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제27조 (의결)

- ① 공학대회의 의결권은 제22조에 규정된 자만이 갖는다.
- ② 공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공학대회 의결권은 대의원 1인당 1표를 가지되, 단위 당 최대 2표로 제한한다.
- ③ 단,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
 1. 제25조에 규정된 공학대회의 의결사항 중 제5호, 제8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25조에 규정된 공학대회의 의결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항의 발의에 관련해서는 제86조 2호를 우선 적용한다.

제 5 장 공과대학운영위원회

제28조 (지위)

공과대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며, 운영기구이다.

제29조 (구성)

- ① 공과대학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과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② 공과대학집행국장은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③ 필요에 따라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30조 (의장)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회의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다만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공과대학운영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의장으로 한다.

제31조 (소집)

- ① 공과대학운영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둔다.
- ② 정기 공과대학운영위원회는 매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 공과대학운영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공과대학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32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 제반 사업을 심의 및 조정하여 공학대회에 제출
2. 본회의 예·결산안을 심의 및 조정하여 공학대회에 제출
3. 공과대학집행국장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심의
4. 공학대회 안건의 심의 및 조정
5. 본회 회칙개정안의 심의
6. 그 밖의 본회의 제반 업무 수행

제33조 (개회)

공과대학운영위원회는 재적 단위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각각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

제34조 (의결)

공과대학운영위원회는 출석 단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의결권은 공과대학학생회장단을 제외하고 각 단위 당 하나씩을 인정한다.

제 6 장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제35조 (구성)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은 공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6조 (지위)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공학대회, 공과대학운영위원회, 공과대학집행국 회의 등의 의장이 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은 대내외적으로 공과대학의 대표로서 지위와 책임을 가진다.
-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이 졸업 자퇴 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 (의무)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실현함과 아울러 대학의 자치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38조 (업무 및 권한)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실행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과대학운영위원회, 공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회, 공학대회, 공과대학운영위원회, 공과대학집행국 회의를 소집한다.
- ④ 공과대학집행국의 국장을 공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⑤ 공과대학집행국의 국장, 차장, 국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⑥ 공과대학 학생회 예산 담당국에서 편성된 예·결산안, 사업계획 등을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공학대회에 제출한다.
- ⑦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⑧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은 각 집행국의 지도, 조절,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 ⑨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은 차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당선인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업무전반에 대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9조 (임기)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차기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공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0조 (탄핵)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본회의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2. 본회의 공과대학 학생회장
 3. 본회의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이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회칙 위반 혹은 범법행위, 학칙 위반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공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 발의
 - ③ 탄핵안 발의 시, 그 대상자는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탄핵 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 ④ 공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뒤, 2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단,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 탄핵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총회의 개최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탄핵안 통과 후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
 3.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투표 실시
 - ⑤ 탄핵 투표에 의한 기타 사항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 ⑥ 탄핵 투표는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⑦ 탄핵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탄핵안 또는 탄핵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제 7 장 비상대책위원회

제41조 (구성)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성한다. 단, 제1호의 경우 전임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구성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2.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이 궐위되었을 때
 3.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이 탄핵되었을 때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과대학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2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 ① 비상대책설립위원회는 제41조 1항 각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단, 11 월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모든 학부 및 학과 학생회 선거가 종료된 후 7 일 이내에 구성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공과대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11 월 선거 무산에 의한 구성은 차기 공과대학운영위원 전원으로 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된 1 인으로 한다. 다만, 11 월 선거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해당 연도 공과대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 인이 차기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1 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하며 2 차 회의에서 다음에 의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최다득표자가 위원장, 차득표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 ⑤ 제1, 2 차 회의의 소집·진행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의장이 한다.
- ⑥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 시간 이후에 해소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과정(후보자 정보 · 투표방식 · 투표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부위원장 선출과정(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43조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공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공과대학집행국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 공과대학집행국을 구성한다.

- ⑤ 임시 공과대학집행국은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단위별 집행부 중 최대 1인씩 추천하여 구성하며, 공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공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공학대회, 공과대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46조 (기타)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제 8 장 공과대학집행국

제47조 (지위)

공과대학집행국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공과대학 학생회가 결정한 전체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제48조 (구성)

- ① 공과대학집행국은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각 집행국의 국장, 차장, 국원으로 한다.
- ② 공과대학집행국은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이 구성하여 공학대회에서 인준한다.

제49조 (업무 및 권한)

공과대학집행국은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① 총회, 공학대회, 공과대학운영위원회 및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에 의해 결정된 업무를 집행한다.
- ② 공과대학집행국의 모든 구성원은 제반 사업보고와 예산 및 결산안을 총회, 공학대회,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 ③ 공과대학집행국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총회, 공학대회,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와 위 기구들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 ④ 각 국의 국장은 공과대학 학생회 기구 전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까지 동일 부서별 연석회의를 둘 수 있다.

제50조 (회의)

공과대학집행국 회의는 제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혹은 구성원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 9 장 학부 및 학과 학생회

제51조 (지위)

학부 및 학과 학생회는 각 학부 및 학과의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52조 (구성)

학부 및 학과 학생회는 각 학부 및 학과의 회원 전원으로 한다.

제53조 (학부 및 학과 학생회장단)

- ①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장단은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단,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칙에 준하여 따른다.
- ②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장단은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 공과대학운영위원으로서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의무를 가진다.

제54조 (업무 및 권한)

- ① 학부 및 학과 학생회는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 및 학과의 자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 ② 학부 및 학과 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각 학부 및 학과의 학생총회이며, 그 다음 의결기구는 각 학부 및 학과 운영위원회이다.
- ③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는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의 집행국이며 각 학부 및 학과 학생회 집행국은 학부 및 학과 대표자회의와 학부 및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보고를 할 책임을 갖는다.

제 10 장 자치단체

제55조 (지위)

자치단체는 본회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며, 각 단체만의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이다.

제56조 (등록 요건)

자치단체로 인정받고 활동하기 위해 다음의 설립 요건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특정 소양에 대해 습득·탐구·창작·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동아리)
2.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들끼리 모여 정보공유·친목을 도모하는 단체
3.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4. 기타 목적과 체계가 분명한 단체

제57조 (분류, 구성)

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활동과 구성에 따라 공과대학 동아리, 학부 및 학과 동아리, 학회로 구성된다.

- ① 자치단체 중 공과대학 동아리라 함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본회의 회원이며 공과대학 소속 3개 이상의 학부 또는 4개 이상의 학과에 분포한 20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자치단체 중 학과 및 학부 동아리라 함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본회의 회원이며 공과대학 소속 1개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에 분포한 20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③ 자치단체 중 학회라 함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본회의 회원이며 공과대학 소속 1개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에 분포한 20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58조 (등록 절차)

본회 산하의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① 등록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소개서, 20인 이상이 서명한 전체 구성원 명부, 전학기 활동보고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록원서와 본회 정회원 100명 이상의 서명을 공과대학 학생회에 제출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제1항의 서류를 확인한 후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 ③ 공학대회에서 의결을 통해 신설자치단체를 인준한다.
- ④ 공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 ⑤ 본회 산하의 자치단체간 전환을 하려는 경우 제57조를 만족하고 본회 정회원 100명 이상의 서명을 제외한 본조 제1항의 모든 서류를 갖추면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공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⑥ 재등록의 경우 구성원 20인 이상이 서명한 전체 구성원 명부, 재등록원서, 전학기 활동 보고서, 사업계획서를 공과대학 학생회에 제출한다.

제59조 (등록 원칙)

- ① 등록은 공과대학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재등록은 매년 1회로 한다.
- ③ 다른 단위와의 중복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60조 (권한)

공과대학에 등록된 자치단체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공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참가에 대한 우선권
2. 공과대학에서 잉여 공간이 발생할 경우 공간 제공
가. 공간 제공은 공과대학 동아리가 다른 자치단체에 우선한다.
3. 공과대학에서 예산 배분 시 지원금 제공

제61조 (징계)

본회의 목적, 집행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치단체나 자치단체 구성원은 본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62조 (징계유형)

- ① 주의대상
 1. 공학대회에 무단 불참했을 경우
 2. 활동 내용이 미비하거나 혹은 제출 서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 ② 경고대상
 1. 예산 집행이 행해진 자치단체 행사가 수렴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의 반납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재등록하지 않거나 자치단체의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3. 주어진 공간을 건전하지 못하게 활용했을 경우
 4. 주의 2회시 경고 1회로 간주함
- ③ 제명대상
 1. 3회째 경고당할 경우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함.(당해 기준)
 2. 자치단체 활동이 중지되었을 경우
 3. 자치단체 구성원이 자치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4회 째 경고를 당했을 경우, 안건 상정 없이 즉각 제명 공포함
 5. 재등록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때 경고 3회

제63조 (징계절차)

- ① 주의
 1. 발의 : 공과대학운영위원 1명 이상의 발의

- 2. 의결 : 공과대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2/3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② 경고
 - 1. 발의 : 공과대학운영위원 1명 이상의 발의
 - 2. 의결 : 공과대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2/3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③ 제명
 - 1. 발의 : 공과대학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
 - 2. 의결 : 공과대학운영위원회(재적의원 2/3 출석과 출석의원 2/3 찬성)이후 공학대회에서의 의결

제64조 (효력)

- ① 주의로 인한 징계조치는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경고 효력은 해당 학기 자치단체에 예산 분배가 있을 시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제65조 (자치단체장의 지위)

- ① 자치단체장은 각 자치단체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② 자치단체장은 공학대회의 대의원 자격을 가진다.

제66조 (자치단체의 해체)

- ① 자치단체 해체 시 해당 학기 공학대회의 인준을 거쳐 해체한다.
- ② 자치단체 해체 시 해당 학기 공학대회에서 학생회비 결산의 의무를 가진다.

제 11 장 재정

제6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사업별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68조 (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② 본회의 재정은 매년 1학기과 2학기과 나누어 집행한다.

제69조 (예산)

- ① 예산은 공과대학집행국 회의에서 항목별로 편성하여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공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확정된 예산안은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 (결산)

- ① 매 학기마다 공과대학집행국에서 결산을 하여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 결산은 공과대학운영위원회 심의종료 15일 이내에 공고한다.
- ③ 결산서는 구체적인 항목 및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71조 (거부권)

- ① 공학대회에서 의결한 예산서에 이의가 있을 시에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공과대학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과대학운영위원회는 재심의 요구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예·결산안을 검토, 수정하여 공학대회에 제출한다.
- ③ 공학대회에서 이를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즉시 공고한다.

제72조 (예산관리 및 인출)

- ① 예산은 사무국장(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이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예치시킨 후 모든 인출사항은 각 단위 대표자가 관리한다.
- ② 학생회비 인출 거부 및 삭감, 동결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학대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제73조 (감사위원회)

- ① (발의) 학생회비 내역에 대한 심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시에는 공학대회의 발의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구성) 감사위원회는 공과대학운영위원 2명과 공과대학 학생회장단과 공과대학집행국의 구성원을 제외한 본회의 정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 ③ (대상)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의 대상은 공과대학, 학부 및 학과 학생회, 자치단체로 한다.
- ④ (권한) 감사위원회는 공과대학, 학부 및 학과 학생회, 자치단체에 대하여 예·결산 자료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과대학, 학부 및 학과 학생회, 자치단체 대표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발족 후 3주 내에 감사활동 결과를 대자보, 학내언론사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에 대한 감사는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끝나기 전에 공고해야 한다.
- ⑥ 감사결과에 대한 문책은 공학대회에서 결정한다.

제74조 (세칙)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학대회에서 정한다.

제 12 장 선거

제75조 (선거 원칙)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한다.

제76조 (선거 시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부득이한 경우 세부 일정은 공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7조 (입후보자)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입후보자는 본회 정회원으로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입후보자는 2인으로 하여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제78조 (공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

- ① 공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공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③ 공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2. 공과대학운영위원 중 최소 4인
- ④ 공선관위는 투표일 20일 전에 구성된다.
- ⑤ 공선관위는 선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79조 (선거운동)

본회의 회원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공학대회 대의원과 공과대학집행국의 구성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0조 (당선)

선거인 재적수의 과반수 투표의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 유효득표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제81조 (당선무효)

- ① 1,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가 유효득표의 오차표수를 넘지 않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 ② 오차율이 유효투표수의 5%가 넘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82조 (재투표)

- ① 제81조 1항의 경우 해당 선분 간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제81조 2항의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83조 (선거무효)

- ①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에는 선거가 무효화한다.

- ② 선거시행 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선관위는 공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고 공학대회의 판단에 의해 선거자체를 무효화 처리할 수 있다.

제84조 (재선거)

선거자체가 무효 처리될 경우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재선거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공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85조 (보궐선거)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되었을 때,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궐위 시점이 당해 2학기 종강일로부터 140일 이하일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 ②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공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86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공선관위에서 정한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 13 장 회칙개정

제87조 (발의)

본회 회칙개정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1.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서면 발의
2. 공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서면 발의
3. 공과대학운영위원회 2/3 이상
4. 공과대학 학생회장의 요구

제88조 (회칙개정소위원회)

- ①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회개소위')는 회칙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본회의 임시기구이다.
- ② 회개소위는 회칙개정 발의 즉시, 공학대회 대의원 중에서 구성한다.
- ③ 회개소위는 회칙개정안을 공학대회 소집 시 공지하여야 한다.
- ④ 회개소위는 회칙개정안을 공학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의결)

- ① 회칙개정의 의결은 공과대학운영위원회를 거쳐 공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회칙개정의 의결은 공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0조 (공포)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 3일 이후에 시행한다.

제2조 (유권해석)

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공학대회에 있다.

제3조 (관례의 준용)

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독립성)

이 회칙은 교내 다른 단과대학과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5조 (효력의 제한)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임기 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은 그 회칙개정 가결 당시의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